

영등포구의회  
제17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박정자 의원 대표발의】



2013. 2. 28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83호로 2013년 2월 18일 박정자 의원외 4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3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장애인체육 활동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장애인체육동호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장애인체육 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체육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가.

#### 4. 참고사항

#####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육성·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장애인체육 진흥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지원 대상사업을 적시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장애인 체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5조는 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체육동호회의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직선거법」의 기부금품 제한 규정의 저축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상호간에 건강증진을 통한 교류 및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 더 나아가 장애를

갖고 생활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인 생활 체육을 통하여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도모하고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시행시 체육동호회 결성 및 체육단체 발족 등의 후속 대책 마련을 통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2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개발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원에 기부된 재산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